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안 번호	2103
----------	------

제출일자 : 2022. 4. 1.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다. 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2. 3. 7. ~ 3. 27.)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등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등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군민 등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

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직접 설치·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중 화장실 등을 군민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 등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관리인은 군민 등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시행하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 군수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해당 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에게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